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8 차 국 방 위 원 회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등〉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41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4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5
1) 개요	5
2)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 및 금전 출연·기부 관련 입법례	6
2)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등 사관교육의 적절성 검토 필요 ...	8
3) 관계부처 의견	9

3. 주요 조문별 검토	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2조)	10
2) 경비 보조(안 제3조)	11
3)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안 제4조)	12
4) 조세감면 등(안 제5조)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3.
3. 회부연월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무기 능력이 고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발발이 빈번해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연계 활동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청소년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군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 군으로의 진출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등을 도모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사단법인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청소년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국방인력의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청소년에 대한 사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방인력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한 보조 및 국유재산 등의 사용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세 감면 등(안 제5조)

정부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예산서·결산보고서 등의 제출(안 제6조 및 제7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검사(안 제8조)

국방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업무에 관한 자료·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으로 본다.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중·고등학교에서 주니어ROTC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보조 등)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조세 감면 등)
제6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8조(업무검사 등)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경과조치)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1) 개요

제정안은 청소년 수련단체의 일종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주관하는 주니어 ROTC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청소년 수련단체인 아람단의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1년 제정),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의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1969년 제정)과 같이 국가가 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09년 국방부 발주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주니어사관 육성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으며, 2017년 국방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25년 기준 32개 고등학교에서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제정안은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이 미래세대를 건전한 국가관과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국방 분야 관련 인력 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임.

2)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 및 금전 출연·기부 관련 입법례

기존의 청소년 활동단체와 관련된 법률로는 1981년 제정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969년 제정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음.

제정안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434호, 1981.4.13. 제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118호, 1969.7.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 (협조 및 지원)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제3조(보조 등)	제5조 (보조등)	제6조(보조)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	제5조(협조 및 지원)
제5조(조세 감면 등)	제6조 (조세감면등)	
제6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 (예산 등의 보고)	제9조(사업의 보고)
제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8조 (결산등의 보고등)	
제8조(업무검사 등)	제9조 (업무검사등)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과태료)	제11조 (벌금)	제11조 (벌칙)

그 중에서도, 제정안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3434호, 1981.4.13. 제정) 과 재정 지원 내용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구조 및 내용으로 구성됨.

제정안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3434호, 1981.4.13. 제정)
제3조(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맹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5조 (보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채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5조(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조세감면등) ①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등 사관교육의 적절성 검토 필요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등 사관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방인력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는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이 규정하는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은 과거 존재하였던 교련 교과와 부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의 경우 UN 아동권리협약¹⁾을 준수하기 위해 학부 과정에서는 동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제식·응급조치 등의 훈련만 실시하고, 졸업 직전에 이르러서야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국방부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소년 대상 군사교육은 교련 부활 및 군 문화 확산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1) 대한민국은 UN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동 협약 제38조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의 군사훈련 및 적대행위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주니어 ROTC 제도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사훈련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동 협약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한국의 중학교는 12~13세에 입학하여 15~16세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15~16세에 입학하여 18~19세에 졸업함)

4) 관계부처 의견

가. 국방부(부동의)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소년 대상 군사교육은 교련 부활 및 군 문화 확산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조세감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으며, 공유시설 무상 사용 역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제정안에 부동의하는 입장임.
나. 기획재정부(부동의)
조세감면의 경우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²⁾ 과 충돌하므로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다. 행정안전부(신중검토 필요)
공유재산은 유상 사용이 원칙으로 예외적 사항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특정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주요 조문별 검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2조)

안 제2조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사관 교육과 연맹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 정 안
제2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방부장관은 청소년사관 교육과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사관 교육과 연맹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³⁾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소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한정되며, 군사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 청소년 사관교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정부조직법」상 청소년사관 교육 등은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3) 「정부조직법」 제36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경비 보조(안 제3조)

안 제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맹에 금전 등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3조(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맹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정안은 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한국청소년연맹을 규율하기 위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⁴⁾하고 있는 점, ② 재정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갖고 미래의 국방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제정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방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3)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안 제4조)

안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공유시설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은 야외 활동과 체육시설 활용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적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유시설에는 군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장기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활동이 관련 법령상 원칙의 예외로 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장기 사용을 허용할 만큼의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방부는 국유시설 중 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 및 통제가 필요하며, 특정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등은 소상공인, 주민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장기사용허가는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을 초래하고, 타 기관·단체·소상공인·주민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연맹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조세감면 등(안 제5조)

안 제5조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한 조세 감면과 기부금 소득공제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제 정 안
제5조 (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청소년의 국가관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연맹에 대한 조세 감면은 재정 여건을 강화하여 주니어 ROTC 프로그램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활동이 조세감면을 인정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복지·구휼 단체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방부는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개별법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⁵⁾가 있어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10

5)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① :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